

의안번호	2221303
의 퇴 인	허성무 의원
회 답 일	2026. 10. 1.
추 계 번호	26A4734

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정원이 확대되는 경우, 추가재정 소요는 2027년 1,200만원, 2031년 1,2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6,000만원(연평균 1,2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평균
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(안 제7조제1항)	12	12	12	12	12	60	12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조제1항 (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	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<u>50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※ (현행) 40명 이내 → (개정안) 50명 이내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7조제1항(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	0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정수가 현행 대비 10명 증가하는 경우, 민간 위촉위원이 10명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함
- 참고로, 현재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위원장 2인(국무총리 및 민간위원장)과 정부위원 16인(당연직), 민간위원 19인으로 구성되어 있음
 - ※ [참고자료]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조직 구성 및 운영 현황
 - 개정안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한시적 특별전문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, 본 추계에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에 한정하여 추계함
 -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회의당 30만원¹⁾의 회의참석 및 안전검토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
 - 2026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가 총 4회 개최될 예정²⁾임을 고려하여 연 4회 회의를 실시한다고 가정함

1)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1일당 20만원을 지급하되,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10만원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음(기획예산처, 「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)

2) 지식재산청 출범(2025.10.1.) 이후 위원회 간사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식재산청으로 변경됨에 따라, 지식재산청의 2026년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계획을 준용함

[표 2]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: 2022~2026년

(단위: 회)

구분	2022	2023	2024	2025	2026
개최 횟수	2	3	2	1	4

자료: 지식재산처

- 회의참석 및 안전검토 수당은 추계기간 동안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
- 개정안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법안 심사 및 민간위원 위촉 등 위원회 구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(안 제7조제1항)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증원된 민간위원(10명)에게 연 4회, 회당 30만원의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,200만원 등 5년간 6,0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3] 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수당 지급 횟수	국가지식재산위원회 (10명×연 4회) (a)	40	40	40	40	40	200
	회의참석수당(b)	0.3	0.3	0.3	0.3	0.3	0.3
계(a×b)		12	12	12	12	12	6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장설희	김신애

☐ 대표연락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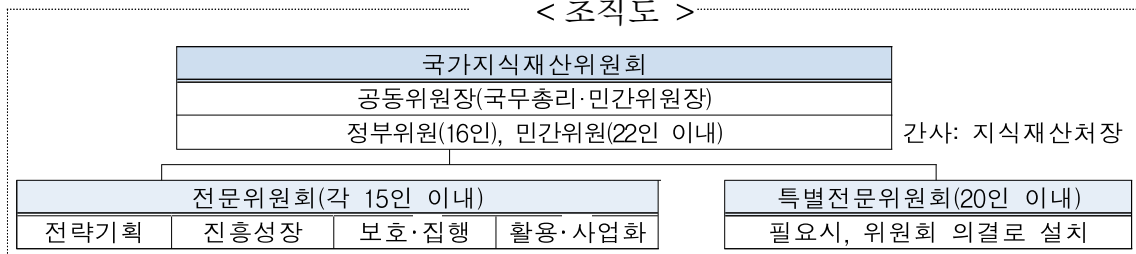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설희	02-6788-4654	shjang@assembly.go.kr

참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조직 구성 및 운영 현황

□ 위원회 개요

- (목적·성격)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·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·평가하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(지식재산기본법 제6조 및 제7조)
- (경과) 「지식재산기본법」('11.5.19. 제정)에 근거, 국가지식재산위원회('11.7.28) 및 사무기구로서 지식재산전략기획단('11.9.1.) 출범
※ 간사부처 : 국조실('11) → 미래부('13.3) → 과기부('17.7) → 지식재산처('25.10)
- (구성) 위원장(국무총리·민간위원장), 정부위원(16인), 민간위원*(22인 이내)
* 임기는 2년,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며 겸직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없음

< 조직도 >



구 분	구 성
위원장(2)	국무총리, 민간위원장(계승균 부산대학교 교수)
정부위원(16)	지식재산처장(간사)·재경부·과기정통부·교육부·행안부·외교부·법무부·문체부·농림부·산업부·복지부·중기부 장관, 기획처 장관, 국정원장, 국조실장, 공정위원장
민간위원(19)	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

- 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 및 한시적 특별전문위원회 설치·운영
 - (전문위) 민간위원 2명이 전문위에 참여하여 본회의와의 연계를 강화하고, 전문위원장(임기 1년)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임
 - (특별전문위) 총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, 본회의 의결로 기한을 정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필요시 위원장 결정으로 연장 가능

□ 위원회 기능

◇ 「지식재산 기본법」 제6조에 따라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·조정하고 그 추진 상황을 점검·평가

- 5년 주기의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
-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·평가
-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인 운용
- 지식재산의 창출·보호·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
-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 마련·추진

□ 관련규정

- 지식재산기본법 및 시행령,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세칙